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4 선고 2020가단51354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한민국

피고A

변론 종결2021. 4. 26.

판결 선고2021. 5. 24.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16. 5. 18.자 3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6. 5. 31.자 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B의 시숙 C의 사망(2014. 12. 25. 사망)에 따라 2016. 2. 22.부터 2016. 4. 30.까지 사이에 상속, 증여세 조사를 하던 중 B가 C으로부터 2007. 4. 26.부터 2009. 12. 18.까지 증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한 후 2006. 8. 1. 아래 내용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원고는 2020. 5. 7. 기준으로 B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305,452,140원의 국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단위: 원)

1	증여세	2016. 8. 1.	2016. 8. 31.	30,776,010	20,773,650	10,002,360	2007.04.	2007.04.26.
2	90,680,590	61,208,810	29,471,780	2007.05.	2007.05.31.			
3	31,986,970	21,591,000	10,395,970	2007.07.	2007.07.03.			
4	26,324,280	17,768,860	8,555,420	2009.08.	2009.08.11.			
5	28,466,980	19,215,000	9,251,980	2009.09.	2009.09.03.			
6	28,324,540	19,119,000	9,205,540	2009.10.	2009.10.21.			
7	28,195,800	19,032,000	9,163,800	2009.11.	2009.11.23.			
8	40,696,970	27,470,250	13,226,720	2009.12.	2009.12.18.			
합계	305,452,140	206,178,570	99,273,570					

나. B는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2016. 5. 18. 현금 30,000,000원, 2016. 5. 31. 현금 20,000,000원을 각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하고, 그 증여하기로 한 계약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2016. 8. 31.경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데, 위 50,000,000원 전액이 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재산공제에 해당하여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라. B는 이 사건 증여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법률행위 이후에 구체적 조세채무로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B가 2009. 4.경부터 2009. 12.경 사이에 증여를 받았을 때 추상적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이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16. 2. 22.부터 2016. 4. 30.까지 사이에 상속, 증여세 조사를 하면서 위 증여 사실을 파악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16. 8. 1. B에게 증여세를 결정,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조세채무로 확정되어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위 기초 사실 표에서 인정한 금액 모두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의 조부 D은 자신이 사망하기 전 자신의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의 부친 E의 몫으로 정하였는데, D 사망 이후 위 토지가 농지여서 우선 E의 형 C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C은 이후 위 토지를 매도한 다음 그 매도대금을 피고의 모친 B에게 준 것이므로, 이는 증여가 아닌 D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을 받은 것임에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채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무를 발생시킨 원고 산하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B가 그 제소기간 내에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전제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성립 및 그 취소와 원상회복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와 같이 B는 고액의 이 사건 조세채무가 있으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여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진영